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9155(본소), 2015나10916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6. 8. 26.

판결 선고 2016. 9. 23.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4가단21321(본소),
2014가단463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충남부여군 C 대 59㎡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에 관하여 2011. 3.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5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C 대 5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6㎡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를 인도하라.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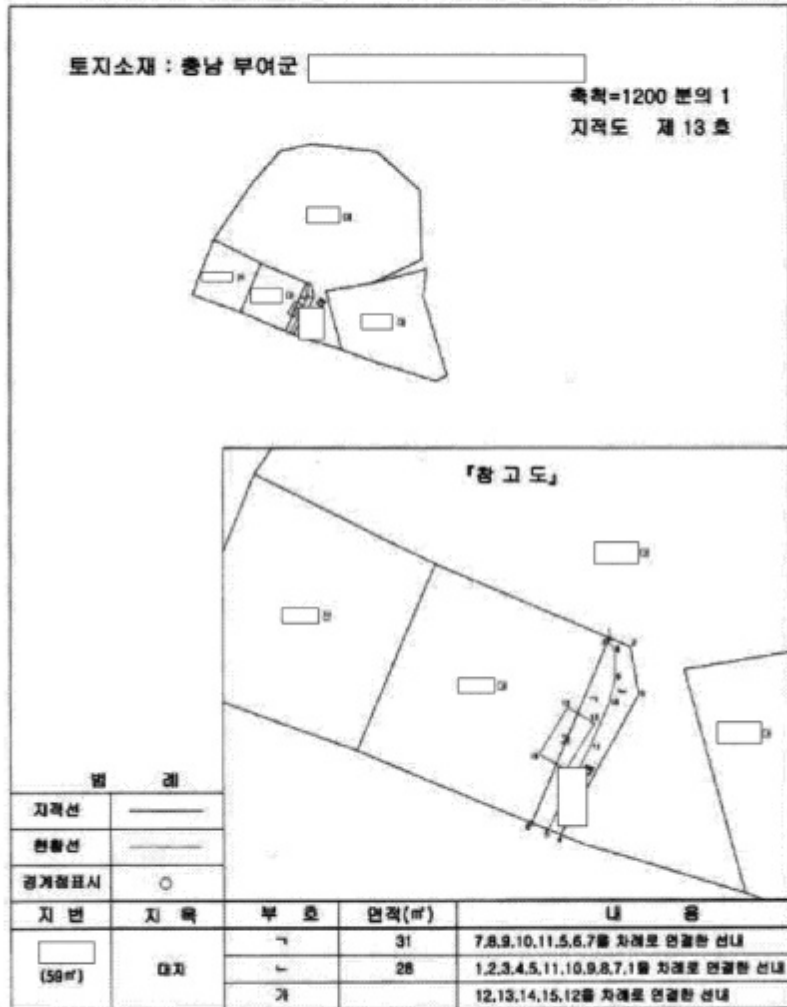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E에게서" 앞에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E이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주택및 이 사건 창고를 증여한 것을 실질적인 재산상속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희, 판사 최리지, 판사 김종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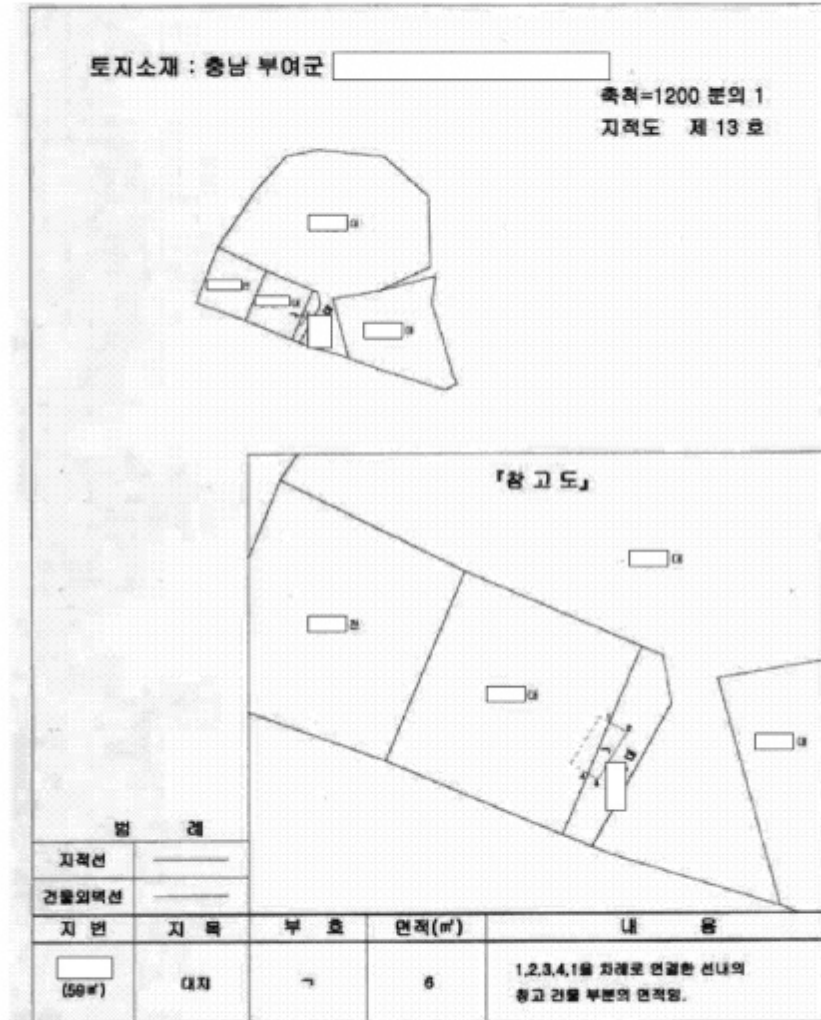
별지1

도 면



별지2

도면



끝.